○ 사 업 명 : 2024년 한강교량 방범 CCTV 영상감시관제시스템구축

(행주대교)

○ 발주기관 :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
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이노뎁㈜

○ 대상물품 : 통신소프트웨어,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4년 한강교량 방범 CCTV 영상감시관제시스템 구축(행주대교)」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 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·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- ② 위 사업의 물품 중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제안요청서)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·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 및 기 시스템 연계로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· 공급사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·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 사가 협의하는 금액은 금36,800,000원(부가세포함) 이내로 한다.

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· 공급사는 이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학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4년 04월 17일



○ 사 업 명 : 2024년 한강교량 방범 CCTV 영상감시관제시스템구축

(행주대교)

○ 발주기관 :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
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이노뎁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4년 한강교량 방범 CCTV 영상감시관제시스템 구축(행주대교)」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 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·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- ② 위 사업의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제안요청서)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 및 기 시스템 연계로 한다. (통합관제 통신소프트웨어)
-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·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· 공급사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·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은 금24,000,000원(부가세포함) 이내로 한다.

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·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· 공급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4년 04월 17일



○ 사 업 명 : 2024년 한강교량 방범 CCTV 영상감시관제시스템구축

(행주대교)

○ 발주기관 :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
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이노뎁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4년 한강교량 방범 CCTV 영상감시관제시스템 구축(행주대교)」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 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- ② 위 사업의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제안요청서)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 및 기 시스템 연계로 한다. (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)
-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·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· 공급사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·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은 금12,800,000원(부가세포함) 이내로 한다.

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· 공급사는 이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· 공급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4년 04월 17일



○ 사 업 명 : 2024년 한강교량 방범 CCTV 영상감시관제시스템구축

(행주대교)

○ 발주기관 :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
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이노뎁㈜

○ 대상물품 : 통신소프트웨어,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4년 한강교량 방범 CCTV 영상감시관제시스템 구축(행 주대교)」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 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·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에 한해 사 용범위를 제한한다.

- ② 위 사업의 물품 중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제안요청서)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·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 되는 부분 및 기 시스템 연계로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·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· 공급사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·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 사가 협의하는 금액은 금36,800,000원(부가세포함) 이내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·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· 기 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· 공급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4년 04월 17일





○ 사 업 명 : 2024년 한강교량 방범 CCTV 영상감시관제시스템구축

(행주대교)

○ 발주기관 :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
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이노뎁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4년 한강교량 방범 CCTV 영상감시관제시스템 구축(행주대교)」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 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- ② 위 사업의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제안요청서)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 및 기 시스템 연계로 한다. (통합관제 통신소프트웨어)
-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·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· 공급사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·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 사가 협의하는 금액은 금24,000,000원(부가세포함) 이내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· 공급사는 이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· 공급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4년 04월 17일



○ 사 업 명 : 2024년 한강교량 방범 CCTV 영상감시관제시스템구축

(행주대교)

○ 발주기관 :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
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이노뎁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4년 한강교량 방범 CCTV 영상감시관제시스템 구축(행주대교)」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 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·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- ② 위 사업의 물품 중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제안요청서)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·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 및 기 시스템 연계로 한다. (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)
-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·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· 공급사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·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은 금12,800,000원(부가세포함) 이내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·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· 공급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4년 04월 17일

